

생활기초편 / I. 체류관계

●거주 장소가 정해지면 신고하기●

중장기 체류자는 주소(거주지)가 정해지면 거주 시작 후, 14 일 이내에 재류카드(입국 후 재류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구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 재류카드는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만 16 세 이상)

* 중장기 체류자란? *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 ①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
- ② 체류자격이 「단기체제」인 사람
- ③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公用)」인 사람
- ④ ①부터 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 ⑤ 특별영주자
- ⑥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
- ⑦ 체류자격 「특정활동(고시 53 호)」 (디지털 노마드)인 사람
- ⑧ 체류자격 「특정활동(고시 54 호)」 (디지털 노마드가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인 사람

* 주민표란? *

주민의 이름이나 주소를 기록한 증명서류로, 주민의 거주 관계를 증명한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이나 주택 임대계약의 수속 등에서 주민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1 통 300 엔)

●이사하기●

* 시내에서 이사할 경우 *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구청에서 수속을 해주십시오. 마이넘버 카드(가지고 있는 경우)와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센다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지금까지 거주하던 곳의 구청에서 이사하기 전에 전출 신고수속을 합니다. 이사한 주소가 일본 국내인 경우 「전출증명서(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 후, 14 일 이내에 이사한 곳의 관공서에서 전입 수속을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가지고 있는 경우)와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본 국내로의 전출 신고를 마이나 포털(행정 수속

온라인 창구. <https://myna.go.jp>)에서 온라인으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 집·아파트를 해약 하는 방법은 P12 를 참고 해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 이외의 일을 하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자격 외 활동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수속을 합니다.

단,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소지하신 분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 후, 재입국하기●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서, 지금까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출국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1 회 한정으로 유효한 것과, 허가 기간중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수차례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중으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최대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입니다.

「재입국 간주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중장기 체류자가 일본 국외로 나갈 때에 출국으로부터 1년 이내 (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입국 간주 허가 (미나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체류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17:15 TEL : 0570-013904 (IP 전화, 해외에서의 전화 TEL : 03-5796-7112) (일, 영, 중, 한, 베트남, 네팔 외 11 개 언어)
센다이 출입국 재류관리국	〒983-0842 미야기노쿠 고린 1-3-20 TEL : 0570-022259 (전국 대표번호) Email : info-tokyo@i.moj.go.jp (일, 영) (이메일 문의에는 동경 출입국 재류관리국이 대응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 (중장기 체류자의 재류 관리 제도에 관한 수속)	https://www.moj.go.jp/isa/index.html (일, 영, 중, 한, 베트남, 네팔 외)
외국인 체류 지원센터 (FRESC / 후레스크)	평일 9:00-17:00 TEL : 0570-011000 (일, 영) (IP 전화, 해외에서의 전화 TEL : 03-5363-3013) https://www.moj.go.jp/isa/support/fresc/fresc01.html

●재류카드의 분실 / 도난시!●

①가까운 경찰서에 갑니다. 언제·어디서 분실, 도난 당했는지 등의 증명서(도난신고 수리증명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연락이 옵니다.

②증명서와 신고번호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③문제가 없다면 그 날 중으로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은 도난, 분실 사실을 알고 난 후,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야 합니다. 여권·사진(4cm×3cm) 1 장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제도 (사회보장·세금번호 제도)●

일본에서는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12 자리의 「마이 넘버(개인 번호)」가 주어집니다.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중장기 체류자와 특별 영주자 등)에게도 마이넘버는 배부됩니다. 마이 넘버는「개인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주민표 등록 후에 등록한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세금, 재해 대책분야 등의 행정 수속 등에 이용되며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제출하거나, 대학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마이넘버는 평생 변경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분실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말고, 소중하게 취급해 주십시오.

※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의 통지 후에 시정촌에 신청하면 신분 증명서로써,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마이 넘버 카드」가 교부됩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고, 얼굴 사진이 있는 IC 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어 편리하게 생활합니다!](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mynumbercard.html)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mynumbercard.html>

(일본어 외의 다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을 갱신·변경할 경우에는 마이넘버 카드의 갱신 수속도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한 내에 수속하지 않으면 그 카드는 실효되어, 재발행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구청·종합지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2026 년 6 월경부터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일체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출입국 재류관리청 HP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의 일체화에 관한 Q & A](https://www.moj.go.jp/isa/11_00051.html)
https://www.moj.go.jp/isa/11_00051.html (일본어 외의 다언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